BIBIDIE #44

가습기살균제 단체 "특조위, 내부제보자 보상 왜 않나"

이기상 입력 2020.01.07 11:30

애경 전 부장, 내부제보자로 기여해 "특조위, 내부제보자 피해 막아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조위 규탄 위원회 규칙 '1억원 안에서 보상도' 특조위 측 "보상 안 한다는 것 아냐" "종합적 판단 필요, 시간 걸리는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국순회 전시회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로비에서 열려 시민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19.11.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의혹 규명에 기여한 기업 내부 제보자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너나우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애경 등 기업에서 내부제보자가 용기를 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런데 특조위는 이들이 받는 불이익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내부제보자 관리 자체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에서 애경산업 부장 출신 최씨 등을 진상규명 기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너나우리 이은영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조위는 기여 지원 대상자 선정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댄다"며 "하지만 실제 반대한 피해자는 1명이며, 그마저도 의견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려 했다고 폭로한 주인공이다.

세월호특별법 4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위원회 규칙안 7조는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 대표는 "최씨는 청문회때 이미 증거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보상금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보상금 등을 지불하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며 "세금이 쓰이는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은 "최씨가 내부제보자로 청문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주자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